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3

제출연월일 : 2005년 월 일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739호)에서 규정된 근무시간, 특별휴가, 영리업무의 금지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제13조)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제16조) 업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특별휴가의 조정(안제23조 별표 3)
- 라.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규정(안제26조)
- 3. 의안전문 : 붙 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5. 관련법령 발췌 : 붙 임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도지사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휴기기간 중의 공휴일"을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동조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의거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본 인	7
결 혼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사 망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2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인 경우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혀 행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 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하다.

③ 〈신 설〉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도지사는 <u>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u>

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 정 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u>1주간의</u>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u>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u>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u>공휴일 등 근무</u>)

②-----<u>토요일 또는 공휴일에</u>-----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도지시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 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 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 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 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도지사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 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u>< 삭 제 ></u>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 략) ⑥ 〈신 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제23조(특별휴가)
① ~ ②(생 략)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u>〈단서신설〉</u>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	
<u>공무원으로 선발된 때</u>	

현 행	개 정 안
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	< 삭 제 >
항의 규정에 의한다. ⑧월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 삭 제 >
수 있다. ③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되는 날부터	< 삭 제 >
<u>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u> <u>★</u> (생 략)	፟፟፟፟፟ (현행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u>토요일 또는 공휴일</u>) <u>토요일 또는 공휴일</u>
<신 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도 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27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u>제26조의</u> <u>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u> 다른 직 무를 겸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 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 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 진 것을 말한다. 1.~ 3. (생 략)	제28조(정치적행위)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29조</u> (시행규칙)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3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 수
결혼	본 인	7	결혼	본 인	7
	자 녀	1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u>5</u>	회갑		삭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최협		삭제
출산	배우자	3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u>5</u>
	본인 및 배우자의 <u>증조부모·</u> 조부모 · <u>외증조부모·</u> 외조부모	<u>5</u>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3</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u>탈상</u>		삭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u>삭제</u>

관 련 법 령 발 췌

□ 지방공무원법

- 제56조(영리업무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구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제9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 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 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 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 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한다.
 -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되는 것
 -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제2조 (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개정 2005.6.30>)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 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 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 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 의 임원이 되는 것
 -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제11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